투자계약서

20__. __.

투자자

- 1. [투자자명]
- 2. [투자자명]

회사

[회사명]

이해관계인



본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이하 "**본 계약 체결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투자자 : [투자자명](이하 "**투자자1**")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투자자명](이하 "**투자자2**")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회사 : [회사명](이하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이해관계인 : [성명](이하 "이해관계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투자자1과 투자자2를 통칭할 경우 "**투자자**", 당사자 전부를 통칭할 경우 "**당사자들**")

[이하 투자계약서 각 조항을 위한 여백]

다음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신주의 발행 사항)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주(이하 "본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인수한다.

1.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별지 1.에 의함

2. 본건 신주의 발행 총수: 00,000주

3. 본건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4. 본건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금 000,000원

5. 본건 신주의 총 인수가액: 금 000,000,000원

6. 본건 신주의 납입기일: 20[]년 []월 []일

7. 각 투자자별 본건 신주의 배정 수량과 인수가액

투자자명	배정 수량 인수 가액
[투자자명]	[]주 금[]원
[투자자명]	[]주 금[]원
합 계	[]주 금[]원

②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주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한다.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본건 신주 인수는 인수가액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선행조 건으로 한다.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신주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 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 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 9. 회사가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다음 각 호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1. 회사의 본 계약 체결일 및 납입기일 기준 회사의 지분증권(발행주식 현황, 주식연계사채 발행 현황, 주식매수선 택권 및 기타 회사의 지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 현황은 별지 2. 지분증권 현황과 같다. 회사의 발행주 식 등 지분증권은 적법하게 납입되었으며 가장납입 된 사실이 없다.
- 2.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년[]월[]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3.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다.
- 4. 회사는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다.

제4조 (거래의 완결)

-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 또는 회사와 투자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각 호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통지한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날(이하 "거래완결일")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 2.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의 납입영수증
-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거래완결일 전 해제)

- ① 본 계약은 거래완결일 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조에 따른 진술과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20[]년 []월 []일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거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비용(회계실사 비용, 법률실사 비용 등 전문가 자문료를 포함)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장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본건 신주의 인수가액(이하 "투자금")을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금으로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의 기재와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되는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투자자의 열람 및 등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투자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이내에 언제든지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임원,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전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해당 이해관계인이 회사를 퇴사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주식 전체를 처분하였더라도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퇴사일 또는 처분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제8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 4.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 6. 회사의 기존 사업의 포기 또는 현저히 다른 사업영역의 착수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 3.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전년도 급여와 비교하여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 4.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제9조 (보고 및 자료 제출)

-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 4.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 5.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차보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 나. 연간경영보고서(사업계획서)
- 다. 주주명부(보고일 기준)
- 라. 세무조정계산서
-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0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공개 및 M&A의무)

- ① 회사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자신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회사가 기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공개를 미루는 경우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해당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3장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건 신주를 포함하여 거래완결일 이후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 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 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조에 따른 주식처분을 동의한 경우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본 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제17조 (주식매수청구권)

-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다.
- 1. 제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완결에 이르게 한 경우
- 2. 제3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 3. 제6조 및 별지 3. 투자금의 사용용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제8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3회 이상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 6. 제10조에 따른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이해관계인이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본건 신주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 $1. \ \,$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2%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 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 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하 동일)
- ③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해당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로부터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전조 제1항 각 호 사유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 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해관계인이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행사와는 별도로 투자금의 [(예시)12]%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예시)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20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만일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1조 (본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본 계약은 전자 또는 수기의 형식을 포함하여 수개의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부본은 모두 원본으로 인정되나 하나의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제22조 (계약의 종료)

- ① 본 계약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본건 신주 총수의 [10]% 미만이 된 경우 또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경우 종료한다.
- ② 전항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 ·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 (계약의 내용 변경)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형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4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완결일 전후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5조 (통지)
①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통지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통 지처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투자자1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투자자2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②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및 사실행위는 본 계약서의 날인 란에 기재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26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 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 2. 공지된 정보
-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4.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법률자문, 소의 제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5.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8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 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이하 서명 또는 날인을 위하여 여백]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란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 체결일: 20[].[].[].

투자자 :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투자자명]

[주소]

업무집행조합원 [회사명]

대표이사 [성명] (인)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이해관계인 : [성명] (인)

0000년 00월 00일 생

[주소]

본건 신주의 종류 및 내용

1. 본건 신주의 종류

상환전환우선주식 (이하 "본건 종류주식")

2. 1주당 액면가액

금 000원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6.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연 []%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7.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8. 전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 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 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 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 5.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 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9. 상환에 관한 사항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 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분증권 현황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주당 액면가액이 금 []원인 보통주식 []주, 종류주식 []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ᄌᄱᄉ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一 十 当 干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합 계	[]주	100.0%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	금 액	비고
합 계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 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충실하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계약서 본문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서 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토	퇴사 제한 기간	서명	
0 0		T <u> </u>	되지 세인 기신	또는 날인

2. 위반시의 효과

위 퇴사제한 약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인은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위약벌 : 금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II.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2. 회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

서 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퇴사	서명	
00		제한 기간	또는 날인	

III.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 금지)

-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의무자")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4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날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위반의 효과)

-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 내지 증권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지급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금원 내지 증권이 금 []원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경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금원 내지 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금 []원을 투자자 또는 회사에게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 및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자로부터 전항의 금원 내지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 받는 경우 이를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